

-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안 설 명 서

2025. 1.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아동가족과]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아동가족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민간 위탁 운영 추진을 위해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신규어린이집 설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빌리브라디체 아파트는 본동 760번지 일원에 소재하며, 총 520세대로 2025. 6월 준공 예정이며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자들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동의 의견을 2025. 1. 14. 제출함에 따라 해당 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서(안)을 사업 주체와 달서구청 간 상호 조정하여 2025. 1. 17.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빌리브라디체 아파트 단지 내에 소재하며, 연면적 377.745㎡, 정원 40명 정도의 관리동 시설입니다.

- 민간위탁 내용은 아동 입소·상담, 보육교직원 인사, 회계, 시설 및 물품 관리 등이며, 위탁체는 공개 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경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 향후 계획으로 위탁체 공개모집,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위탁계약 체결, 아파트 준공 이후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8월경 개원할 예정입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00925008
----------	----------

제출일자: 2025. 1. 23.

제출자: 달서구청장
(아동가족과장)

1. 제안이유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민간 위탁 운영 추진을 위해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및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위탁운영)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및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 필요성

-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운영해야 하므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제고 하는데 유리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어린이집 운영(아동 입소·상담 등 보육, 인사·회계 등)
- 어린이집 시설 및 물품 등 재산관리

라. 위탁시설 현황

○ 신규설치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안)	운영방식	세대수
빌리브라디체 어린이집(가칭)	본동 760번지 (본동)	377.745㎡ (지상1)	40명 (예정)	민간위탁	520

마. 위탁기간: 5년(준공 일정에 따라 결정)

바. 수탁자 선정방식: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육분야 전문가(대학교수) 자문

- 민간이 가진 보육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구성의 유연함으로 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의 전문성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고려

- 지역 내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여를 통해 경제적 활성화 및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

3. 참고사항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의견: 붙임 1
- 관계법령: 붙임 2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및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위탁운영)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및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붙임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의견

□ 전문기(홍희주 계명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자문 의견

검토내용	검토결과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운영은 교육 분야가 강조되는 특수성을 가지며,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발휘하기 위해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운영체가 필요함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 ◦ 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공통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어린이집 간의 통일성과 형평성, 교육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규정 및 지도·점검, 공통된 운영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3.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분야 전문성 수준이 확보된 위탁체가 운영함으로써 이에 대한 재교육의 비용 절감 ◦ 위탁체가 지원금을 지원받아 자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 어린이집의 특성과 행정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 운영 가능 ◦ 전문인력 구성과 채용의 유연성 확보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이 가진 보육의 전문성이 두터우며, 실무와 교육 경력이 운영에 투입되기에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위탁체로 선정 가능함
5. 성과 측정의 용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기관, 동일 성과 기준 적용으로 각 기관의 달성도에 대한 비교 측정 용의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교육부에서 정기적으로 보육시설 평가 실시 ◦ 엄격한 평가시스템을 적용받으므로 총체적인 역량 제고 및 발전을 위한 자가 체크 및 모니터링 가능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3조(지도감독 및 조치)에 따라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위탁체가 충분 ◦ 지역내 민간의 지역 공공서비스 참여를 통하여 경제적 활성화 및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

□ 전문가(이진희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자문 의견

○ 보육의 공공성 제고에 대한 요구와 사회적 비용 고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 공공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음.
- 한편 지속되는 저출산 현상과 어린이집에 대한 현재의 수요-공급 측면(어린이집 폐원을 증가)을 고려하여야 함.
- 또한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적 로드맵이 재편되고 있는 과정이므로 관련 정책의 추이에 따라 보육 공공성 제고 방안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경제적 비용(기회비용 포함)이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기존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탁월한 보육철학과 성실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 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지역의 보육 공공성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평가, 관리의 연계

- 민간위탁 선정 어린이집은 지금까지의 전문적인 보육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되,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받는 지원을 질 높은 보육 서비스에 투입함으로써 보육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민간위탁 어린이집 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 및 관리 지침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의무평가와 달서구청의 지도를 결합하여 투명한 회계 처리, 우수한 보육 환경, 질 높은 보육 서비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피드백에 기초한 보육의 질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5조(위탁운영)

-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을 실시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재위탁(위탁운영자 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